



제 410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신설 등 〉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31호)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신설 등	3
2. 벌칙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변재일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9. 26

다. 회부연월일 : 2023.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이와 함께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부가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의 신고 의무제 도입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28조의2 신설). 신고된 이용약관에 관하여 일정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약관의 변경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

현행	개정안
<신설>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용약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이용약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이용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

현행	개정안
	<u>선권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③ 이용약관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검토사항

○ 최근 판교 SK C&C('22.10.15.) 화재로 인해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막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발생시킴에 따라, 대형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 카카오 등과 연계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서비스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¹⁾,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임.

○ 이처럼 대형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 인상, 서비스 해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

1)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에 연계된 서울시 시스템은 카카오(84종), 네이버(16종), 구글 및 페이스북 등 기타 플랫폼(7종)까지 총 107종에 달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할 의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된 이용약관에 관하여 일정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확대된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여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입법 방식도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를 구분하고 있고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 접속이라는 본질적인 의사소통에 기반한 공적 성격이 강해 이용서비스의 적절성, 요금의 합리성 등에 대해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이러한 정당성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 다음과 같이 한미 FTA 위반 소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할 가능성 및 중복규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을

신고토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미FTA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부가서비스 공급 기업에게 요금이 포함된 이용약관 등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약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FTA 위반 소지 등 통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 한미 FTA 관련 규정 >

제14장 통신 - 제14.13조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1.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아니한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그러한 서비스 요금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다. 그러한 서비스의 요금표를 제출할 것

※ 예외적으로 반경쟁 시정, 경쟁 촉진, 소비자 이익 보호 목적을 입증하면 요금표 제출 요구 가능

- 또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국내 사업자-해외 사업자 간 느끼는 규제 부담에는 간극이 있어 글로벌-국내 산업 간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사업 다각화에서만 제한을 받아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국내 플랫폼은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입장임.
- 전산업·다분야에 걸친 플랫폼 산업 특성,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약관규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부족으로 규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양면 시장에 기초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비추어 한

서비스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별로 이용약관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

- 이처럼 통상 우려, 글로벌-국내 플랫폼 산업 간 격차 심화 가능성, 규제 실효성 확보 한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동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적 성격을 지닌 기간통신역무와 달리,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고 동태적이어서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바 동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공정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약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임.

- 한편, 동 법안의 이용약관 포함사항 및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해 업종별 맞춤형 계약 관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사업자의 이용약관의 핵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의 이용에 관

2) 예시로 네이버의 경우, 검색, 뉴스, 블로그, 웹툰, 부동산, 페이, 스마트스토어, 클라우드(MYBOX), 지도, 카페 등 여러 서비스에서 이용자·입점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는 입장임.

련된 사항인 만큼, OTT 콘텐츠의 소관 부처인 문체부를 신고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정 수용의 입장임.

- OTT 사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 대상을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초과하여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국경 간 경계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사전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벌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97조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97조(벌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u>
7. (생략)	7. (현행과 같음)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신설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벌칙을 두려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제28조의2의 신설 여부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내용임.

문의처

02)6788-5225